

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종합감사 결과

I. 감사 개요

- 기간 : (현장감사) '13.4.15~4.23 (추가조사·분석) '13.4.24 ~ 6.14
- 감사단 : 법무감사기획팀장(감사단장) 외 5인
⇒ 국무조정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('13.7.8)

II. 분야별 감사결과(요약)

① 조직·인사 분야

- 신규직원의 호봉을 규정보다 과다 산정하여 예산 낭비 초래 : 기관경고, 주의
- 전문연구직 등 계약직의 채용·인사 규정 불비: 개선
- 인턴 채용 면접 위원을 편의적으로 구성하고, 면접도 부실하게 실시하는 등 인턴 채용·관리 부적정 : 개선, 권고

② 예산 집행 분야

- 이사장의 직책수행경비(3,000만원)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, 사학연금을 추가로 지급 받음 : 시정 - 근로소득 신고
- “직책급은 보수성 경비로서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”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다르게 직책수행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집행 지침 개정: 개선, 문책
- 정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(성과급) 지급 : 시정(성과급 4,400만원 차감), 개선
- 언론사에 대한 연구성과 홍보비를 세부산출 근거 없이 지급하고, 전문가 자문료(780만원)를 연구종료 후 부당하게 지급: 기관경고, 주의

③ 연구사업 관리 분야

- 연구수행과 무관한 경비를 지급하고, 지출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연구비 정산 부적정: 개선
- 협동연구사업을 특정 협회에 한정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적정: 개선

- 연구회와 연구사업 수행자 간 중간 관리역할을 수행한 기관(사회과학협의회)에 직접수행 경비를 과다 지급: **개선, 주의**
- 인문정책연구사업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 결정액보다 임의로 상향·조정하여 예산 낭비(2,885만원) 초래: **개선, 문책**
-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평가사업 평가위원에 선정: **기관경고**

Ⅲ.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(안)

① 총괄

총계	시정	개선	권고	기관경고	문책	주의
24건	3건	8건	1건	5건	2건	5건

② 세부 내역

지적사항	처분요구	
	기관	관련 직원
① 정규직 경력산정 부적정	기관경고	주의
② 계약직 운영규정 미비	개선	
③ 인턴 채용·관리 부적정	개선, 권고	
④ 이사장 수당 등 지급 부적정	회수, 시정, 개선	문책, 주의
⑤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	시정, 개선	
⑥ 전문가활용비 지급 부적정	기관경고	주의
⑦ 홍보경비 지급 부적정	기관경고	주의
⑧ 위탁연구사업 정산 서류 관리 부적정	개선	
⑨ 협동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·평가 부적정	개선	
⑩ 협동연구사업 관리 부적정	기관경고	
⑪ 연구공통 관리비 지급 부적정	개선	주의
⑫ 인문정책연구사업 계약액 상향 부적정	개선	문책
⑬ 평가 사업 평가위원 산정 부적정	기관경고	